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0. 9 .
제출자 : 이천시장

□ 제안이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제한대상을 건축법상 용도로 일원화함(안 제2조).

- 당초 : 식품위생법(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홍주점)

공중위생법(숙박업)

관광숙박업(관광숙박시설)

- 변경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홍주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숙박시설

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정함(안 제3조).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500미터 지역, 수계상 상류방향 10킬로미터이내 하천의 경계 500미터이상인 지역

- 휴호저수량 30만제곱미터이상의 농업용저수지 경계 200미터이상인 지역

- 지방1급하천 경계의 경계 100미터이상인 지역

- 도로법상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상인 지역(숙박시설에 한함)

-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완화(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허용)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위락·숙박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균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균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영업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제3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지역)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상인 지역과 500미터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나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인 지역과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4. 유효저수량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인 지역과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5.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상인 지역과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6. 도로법에 의한 도로변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이상인 지역에 한한다)

제4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제3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조례 제242호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설치가능지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제정규정에 의한다.